

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사례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호 판결 선고



중대재해 개요

'22. 5. 14.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A 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5층(약 16.5m)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하여 사망

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- 1. A사 :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**
»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① 유해·위험요인 확인·개선 업무절차 마련
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
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
- 2. 현장소장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**
» 안전대부착,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규칙상 조치 미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5층(16.5m 높이)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
- 3. B사 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**
* B사는 도급액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
- 4. A사 안전관리자 : 업무상과실치사**

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

- A사 대표이사 :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
- A사 : 벌금 3천만원
- A사 현장소장(안전보건총괄책임자), B사 현장소장(관리감독자) :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
- B사 : 벌금 1천만원
- A사 안전관리자 : 벌금 5백만원

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호 판결 선고



중대재해 개요

'22. 3.16. A 사업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B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1.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

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- 1. A사 대표이사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: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, 산업안전보건법위반(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치사), 업무상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위반(안전·보건조치의무위반)**
»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아래의 2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
②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
»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
② 안전한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
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 거리 확보
- 2. B사 사업주(안전보건관리책임자): 산업안전보건법위반(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), 업무상과실치사**
* B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
» 아래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
② 안전한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
③ 크레인 이용 중량물 인양 시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 거리 확보
- 3. A사 : 대표이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**

각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

- A사 대표이사 : 징역 1년(법정 구속)
- B사 사업주 :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40시간
- A사 : 벌금 1억원



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



신청 사업장 (필수 작성)	사업장명		사업장관리번호 (개시번호) 사업자등록번호	
	소재지		상시근로자수 *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	
	대표자	성명	휴대전화번호	
	업무담당자	성명	휴대전화번호	
	KOSHA-MS, ISO45001 등 인증여부		☐ 인증 ☐ 인증예정(진행중)	
컨설팅 기관 (선택 작성)				
컨설팅 지정 기관명		* 컨설팅 기관 지정시 작성		
2023년도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「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」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.				
		년	월	일
	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
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				
		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공지사항				
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(휴대전화)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				
처리절차				
신청서 작성 신청인	접수 공단 광역본부 등	서류검토 공단 광역본부	컨설팅 수행기관 배정 공단 광역본부	대상선정 결과통지 공단 광역본부

광역(지역)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연락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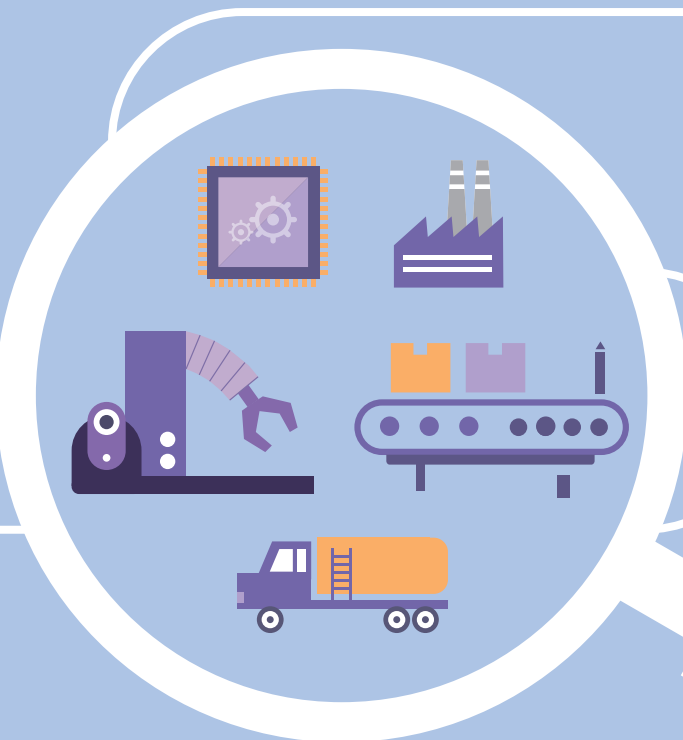


광역(지역)본부	연락처	광역(지역)본부	연락처
서울광역본부	TEL: 02-6711-2963 FAX: 02-6711-2959	인천광역본부	TEL: 032-510-0606 FAX: 032-575-7287
부산광역본부	TEL: 051-520-0528 FAX: 051-520-0539	경기지역본부	TEL: 031-259-7147 FAX: 031-259-7180
광주광역본부	TEL: 062-949-8747 FAX: 062-944-8273	대전세종광역본부	TEL: 042-620-5616 FAX: 042-632-4787
대구광역본부	TEL: 053-609-0523 FAX: 053-421-8629		

- 신청서 다운로드 : 공단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⇒ 사업안내 ⇒ 산업안전 ⇒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⇒ 자료실
- 관련 자료 : 「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」 자세히 보기



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중대재해처벌법)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,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, 소규모 사업장의 해당 의무이행에 관하여 우려가 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.

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전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

☑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란?

→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 구축에 있어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며, 체계구축 7가지 핵심요소 중 **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·대체·통제**를 강조한 안전보건관리체계

자기규율 예방체계

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,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·제거하고, 사고 발생 시에는 사업장의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

☑ 필요성

- 총합한 정부 규제와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예방의 한계 체감
- 사업장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자체적 위험요인 개선 역량 부족
- 노사의 자발적 노력 촉진이 선진국 중대재해 감축의 결정적 계기
- (영국) 목표만을 제시하는 규제를 통해 기업에 달성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
- (독일) 노사자치입법으로 재해예방규칙(UVV) 제정, 산업환경에 맞는 기업 자율 산재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법체계 도입
- » 노사의 자발적 노력과 자체규범으로 이행되는 ‘위험성평가’체도를 핵심수단으로 사용

☑ 접근 방법

- 내실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중점 수행
- 정부규범 하에 자체 규범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유도
-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·대체·통제를 이행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

- 01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**위험요인**을 찾아내야 합니다.
- 02 **위험요인**을 **제거·대체**하거나 **통제**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.
- 03 **경영자**가 「안전보건경영」에 대한 확고한 **리더십**을 가져야 합니다.
- 04 모든 **근로자**가 「안전보건」에 대한 **의견**을 자유롭게 **제시**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05 급박히 발생한 **위험**에 **대응**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.
- 06 사업장 내 **협력업체**를 포함한 **모든 근로자**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.
- 0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**평가**하고 **개선**해야 합니다.

안전보건관리체계, 이렇게 구축하세요!

- ▶ 사업장에 따라, 보유한 기계·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.
- ▶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,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.
- ▶ 공정이 복잡하고, 위험요인이 많은 사업장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.

	전통적 안전보건 활동	안전보건관리체계
동기	처벌 회피 ➔ 수동적	성과 달성 ➔ 적극
책임	안전보건 담당자	경영자
평가	외부점검 (고용노동부 등)	자체 점검
목표	처벌 회피	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

☑ 컨설팅 중점 지원사항

-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* 등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
- *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중심(추락·비계, 지붕, 사다리, 고소작업대, 끼임·방호장치, LOTO, 부딪힘·혼재작업, 충돌방지장치)
-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해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등을 중심으로 「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핵심 7가지 요소」 컨설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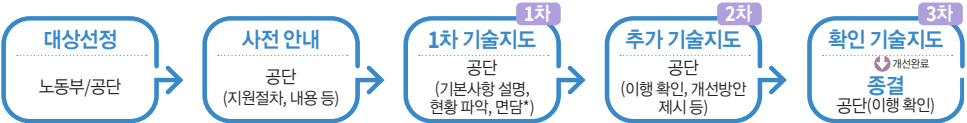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공단)

☑ 신청

- 근로자수 5인(제조업 10인)이상~299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(건설업 제외)에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 신청
- ※ KOHSA-MS, ISO45001 등 인증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

☑ 공단에서 사업장별 3회 방문 하여 컨설팅 진행

☑ 사업절차


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위탁)

☑ 신청

- 근로자수 5인(제조업 10인)이상 ~ 50인 이하인 사업장 중 업종(건설업 제외) 관계없이 공단에 컨설팅 신청
- ※ KOHSA-MS, ISO45001 등 인증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

☑ 민간 수행기관에서 사업장별 5회 방문 하여 컨설팅 진행

- ※ 민간 수행기관 : 안전(보건)관리전문기관, 안전보건진단기관, 산업안전(보건)지도사 법인, 노무법인 등

☑ 사업절차



다만 동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(증빙)될 수 없으며, 향후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·발전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